

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7월 7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 7. 3. 공포·시행)에 따라 국 단위 기구를 축소하는 한편,
- 뉴타운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·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기구 신설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국·사업소 단위 기구 축소 및 신설·명칭변경

- 국 단위 조직 축소(7국 → 5국으로 조정)(안 제5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)
 - 환경수도국 폐지
 - 뉴타운개발국 폐지

- 사업소 신설(안 제17조)
 - 맑은물청소사업소
 - 뉴타운개발사업단
- 국·직속기관·과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10조 및 제10조의3)
 - 주민생활지원국 → 복지문화국
 - 도시국 → 도시환경국
 - 부천시원미구보건소 → 부천시보건소
 - 부천시소사구보건소 → 부천시소사보건소
 - 부천시오정구보건소 → 부천시오정보건소
 - 공공디자인과 → 도시디자인과
- 소속 변경(안 제10조의3 및 제17조)
 - 환경수도국 환경보전과 → 도시환경국 환경보전과
 - 환경수도국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
→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행정과·수도시설과·정수과·하수과·청소과
 - 뉴타운개발국 뉴타운개발과, 도시균형개발과, 공영개발과 → 뉴타운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·도시균형개발과·공영개발과
- 나. 국 사무조정(안 제7조, 제8조)
 - 총무국 사무 중 혁신분권 사무를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함.
- 다.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(별표 1, 별표 2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작년 11월에 이어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?</p>	<p>○ 법령에 따라 인구 90만미만인 우리 시는 7국에서 5국으로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부득한 조직개편임.</p>
<p>○ 세계적인 추세가 녹색성장과 저탄소정책 등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보전과 청소업무 등이 복지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</p>	<p>○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</p>
<p>○ 동주민센터에 6급 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지면 동장부재시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음. 행안부에 건의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?</p>	<p>○ 모든 동사무에서 6급 1명은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음.</p>
<p>○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각한데 모든 동주민센터에 6급을 2명씩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?</p>	<p>○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어려움이 있으며, 인사적체 문제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해소될 것으로 생각함.</p>
<p>○ 지난 번 조직개편시 도시미관과를 신설하여 노점상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였는데 기업형 노점상이 늘어나는 등 단속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나타나고 있음.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?</p>	<p>○ 이번 조직개편은 법령에 따라 국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둬.</p>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우리 시가 인구 90만이 되는 시점은 언제이며, 인구 2-3만 때문에 국을 축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?	○ 2015년은 되어야 90만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, 법령에 의해 국이 축소되는 것임.
○ 부천시보건소, 원미보건소, 소사보건소로 기관명이 바뀌는데 명칭 선정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? 국·도비 지원에 문제가 있어 보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가?	○ 지소는 읍,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, 국·도비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.
○ 소사, 원미보건소장은 부천시보건소장의 결재를 받는 하부조직인가?	○ 그러함.
○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며, 인건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은 없는가?	○ 시범실시로 인해 인력조정시 혜택을 받았으며, 인건비 한도는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.
○ 총액인건비제 취지가 인건비 범위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등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인데도 상부 지침에 의한 잦은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으며, 조직개편이후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?	○ 앞으로 조직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음.
○ 교육지원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는데 소홀히 될 우려는 없는가?	○ 팀이 신설되어 업무가 확대되는 개편임.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소이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사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.</p> <p>(기타 질의는 회의록 참조)</p>	<p>○ 알겠음.</p> <p>(이상 총무과장)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24호
의결 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6. 2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 7. 3. 공포·시행)에 따라 국 단위 기구를 축소하는 한편,
- 뉴타운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·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기구 신설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국·사업소 단위 기구 축소 및 신설·명칭변경

- 국 단위 조직 축소(7국 → 5국으로 조정)(안 제5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)
 - 환경수도국 폐지
 - 뉴타운개발국 폐지
- 사업소 신설(안 제17조)
 - 맑은물청소사업소

- 뉴타운개발사업단

○ 국·직속기관·과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10조 및 제10조의3)

- 주민생활지원국 → 복지문화국

- 도시국 → 도시환경국

- 부천시원미구보건소 → 부천시보건소

- 부천시소사구보건소 → 부천시소사보건소

- 부천시오정구보건소 → 부천시오정보건소

- 공공디자인과 → 도시디자인과

○ 소속 변경(안 제10조의3 및 제17조)

- 환경수도국 환경보전과 → 도시환경국 환경보전과

- 환경수도국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
→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행정과·수도시설과·정수과·하수과·청소과

- 뉴타운개발국 뉴타운개발과, 도시균형개발과, 공영개발과 →
뉴타운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·도시균형개발과·공영개발과

나. 국 사무조정(안 제7조, 제8조)

○ 총무국 사무 중 혁신분권 사무를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함.

다.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(별표 1, 별표 2)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원미구보건소, 소사구보건소, 오정구보건소”를 “부천시 보건소, 부천소사보건소, 부천오정보건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립도서관”을 “맑은물청소사업소, 뉴타운개발사업단, 시립도서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, 환경수도국, 도시국, 뉴타운개발국”을 “복지문화국, 도시환경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혁신분권”을 “인재육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체육진흥, 체육시설, 청소년육성, 사회체육”을 “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·사회체육·학교지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정책개발”을 “정책개발·혁신분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”을 각각 “복지문화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3의 제목 중 “도시국”을 “도시환경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시국에 도시계획과”를 “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, 환경보전과”로 하며, “공공디자인과”를 “도시디자인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시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“제2호, 제3호, 제

4호, 제5호, 제6호”를 각각 “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
제10조의4를 삭제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소장·관장 또는 센터장)”을 “(소장·단장·관장 또는 센터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소장·관장”을 각각 “소장·단장·관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1호, 제2호, 제3호”를 각각 “제3호, 제4호, 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맑은물청소사업소

- 가. 상수도특별회계운영·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
- 나. 수도시설·계량기·급수·탐사·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
다. 환경관리, 정수, 정수시설 운영·시설물 개보수, 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
- 라. 하수행정·하수처리장운영·하수시설관리·하수관망 정비 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
- 마. 청소·자원재활용·음식물쓰레기·대형폐기물·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

2. 뉴타운개발사업단

- 가. 뉴타운지구 및 신·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- 나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

다. 택지개발·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·체비지에 관한 사항
별표 1의 기관명 중 “부천시원미구보건소”를 “부천시보건소”로 하고,
“부천시소사구보건소”를 “부천시소사보건소”로 하며, “부천시오정구보
건소”를 “부천시오정보건소”로 하고, 부천시농산지원과란 다음에 부천
시도시미관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기 관 명	소 재 지
부천시도시미관과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2]

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(제12조제2항관련)

명 칭	관할구역	비 고
부천시보건소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	원미구 일원 소사구 일원 오정구 일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(생 략)</p> <p>1. 직속기관: <u>원미구보건소, 소사구보건소, 오정구보건소</u></p> <p>2. 사 업 소: <u>시립도서관, 공원관리사업소, 교통정보센터</u>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직속기관: <u>부천시보건소, 부천소사보건소, 부천오정보건소</u></p> <p>2. 사 업 소: <u>맑은물청소사업소, 뉴타운개발사업단, 시립도서관,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, 재정경제국, <u>주민생활지원국, 환경수도국, 도시국, 뉴타운개발국, 건설교통국</u>을 둔다.</p>	<p>제5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---<u>복지문화국, 도시환경국</u>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·② (생 략)</p> <p>1. 문서·복무·인사·조직관리·교육·국제교류·행정서비스·<u>혁신분권·후생복지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~4. (생 략)</p> <p>5. <u>체육진흥, 체육시설, 청소년육성, 사회체육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7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<u>인재육성</u>----- -----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·사회체육·학교지원</u>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재정경제국에 두는 과) ①</p> <p>· ② (생략)</p> <p>1. 시 행정의 종합기획·정책개발·법무·예산의 편성 및 집행·투자심사·경영사업·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·의회협력·심사분석·성과관리·통계에 관한 사항</p> <p>2.~6. (생략)</p>	<p>제8조(재정경제국에 두는 과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정책개발·혁신분권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~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</p> <p>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문화산업과, 문화예술과를 둔다.</p> <p>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	<p>제10조(복지문화국에 두는 과) ①</p> <p>복지문화국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복지문화국장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 과)</p> <p>① 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</p> <p>② 환경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1. <u>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 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 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·결산, 수도검침·요금부과·징수·채납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수도시설·급수·급수공사·탐사·누수수리·계량기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환경관리, 정수, 정수시설운영·시설물 개보수, 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하수행정·하수처리장 운영·하수시설관리·하수관망 정비 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</u></p>	
<p>제10조의3(<u>도시국에 두는과</u>) ① <u>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공원녹지과, 건축과, 주택과, 시설공사과, 공공디자인과를 둔다.</u></p>	<p>제10조의3(<u>도시환경국에 두는과</u>) ① <u>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, 환경보전과,-----도시디자인과-----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0조의4(뉴타운개발국에 두는</p>	<p>② 도시환경국장은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 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과) ① 뉴타운개발국에 뉴타운개발과, 도시균형개발과, 공영개발과를 둔다.</p> <p>② 뉴타운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뉴타운지구 및 신·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</p> <p>2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3. 택지개발·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·체비지에 관한 사항</p>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
<p>1. (생략) 가.~마. (생략)</p> <p>2. (생략) 가.~나. (생략)</p> <p>3. (생략) 가.~다. (생략)</p> <p>[별표 1]</p>	<p><u>나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다. 택지개발·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·체비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현행 제1호와 같음) 가.~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2호와 같음) 가.~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 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</p>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197 1128 529 1184">기관명</th> <th data-bbox="529 1128 794 1184">소재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197 1184 529 1240"><u>부천시원미구보건소</u></td> <td data-bbox="529 1184 794 1240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97 1240 529 1296"><u>부천시소사구보건소</u></td> <td data-bbox="529 1240 794 1296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97 1296 529 1352"><u>부천시오정구보건소</u></td> <td data-bbox="529 1296 794 1352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97 1352 529 1451"><신설></td> <td data-bbox="529 1352 794 1451"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명	소재지	<u>부천시원미구보건소</u>	(생략)	<u>부천시소사구보건소</u>	(생략)	<u>부천시오정구보건소</u>	(생략)	<신설>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804 1128 1136 1184">기관명</th> <th data-bbox="1136 1128 1401 1184">소재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804 1184 1136 1240"><u>부천시보건소</u></td> <td data-bbox="1136 1184 1401 1240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04 1240 1136 1296"><u>부천시소사보건소</u></td> <td data-bbox="1136 1240 1401 1296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04 1296 1136 1352"><u>부천시오정보건소</u></td> <td data-bbox="1136 1296 1401 1352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04 1352 1136 1451"><u>부천시도시미관과</u></td> <td data-bbox="1136 1352 1401 1451">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명	소재지	<u>부천시보건소</u>	(현행과 같음)	<u>부천시소사보건소</u>	(현행과 같음)	<u>부천시오정보건소</u>	(현행과 같음)	<u>부천시도시미관과</u>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
기관명	소재지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원미구보건소</u>	(생략)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소사구보건소</u>	(생략)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오정구보건소</u>	(생략)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
기관명	소재지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보건소</u>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소사보건소</u>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오정보건소</u>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
<u>부천시도시미관과</u>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																				

〈관계법령발췌서〉

○ 지방자치법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[별표 3]

<개정 2008.7.3> 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.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 (제13조제1항 관련)

구분		실·국	실·과·담당관
시	인구70만이상 90만미만(구를 설치한 시)	5개 이내	